

■ 계약시 공통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
공통 기본 서류	○		계약금(무통장입금증)	· 분양계약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입금증(계좌이체영수증 포함)
	○		신분증	· 주민등록증,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, 외국국정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· 용도 : 아파트 계약용(본인 발급 필수), "본인서명사실확인서"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(계약자)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함.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(용도 : 아파트 계약 위임용(본인 발급 필수))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(계약체결 장소 비치)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
	○		인감도장(계약자)	
	○		위임장(계약자)	
	○		신분증 및 인장(대리인)	

■ 자격검증 공통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해외 근무자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·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·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·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○		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·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 및 직계존속	·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·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출입국사실 증명서	배우자	·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·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
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	○		무주택 소명 서류	해당 주택	·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·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· 소형·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 등) 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·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·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·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·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.
 ※ 2005.7.1일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"세대주 서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서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)
 ※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
 ※ 상기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청약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계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 ※ 본 배포자료는 작업 및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
■ 유의사항

- 청약신청, 자격관련 등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수신한 자료와 상이하여, 부적격 의심자로 통보받은 고객은 부적격 당첨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소명하지 못할 시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.
-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정된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'당첨자명단 삭제 요청서 및 권리포기각서'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